

[통신비밀침해] 회사의 비밀정보,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 차량에
비밀녹음장치 및 위치추적장치 설치행위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형사처벌: 서울남부
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합194 판결



1. 사안의 개요

회사의 사업장 관리자가 영업자료 등을 유출, 동종업체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행적을 조사하려고, 대표이사가 영업팀 차장에게 시켜 관리자에게 제공한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고,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적발됨. 또한 피해자의 차안에 있던 외장하드를 무단으로 가져간 사실도 있음.

2. 법원 판결요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 영업부 차장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합194 판결

영업비밀, 기술유출, 경업금지, 전직금지, 민형사소송, 다수사건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